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 자료 제공 -

환경부는 지난 8월 18일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실태가 급격히 악화된 종이팩, PET 단일무색 등의 품목에 대한 재활용의무율을 조정하기 위해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19-266호, 2020. 1. 1)’을 일부개정하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다음에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실태가 불가피하게 급격히 악화된 품목(종이팩, PET 단일무색)에 대해 재활용의무율 조정 필요

2. 주요 개정사항

가. (종이팩)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회수량이 급감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년도 재활용의무율(30.3%)을 22.8%로 인하(7.5%p↓)

최근 3년 재활용률				‘20년도 예상 재활용률(B)	차이 (C=A-B)	‘20년도 의무율	
‘17년도	‘18년도	‘19년도	평균(A)			현행(D)	조정안(E=D-C)
22.5%	22.3%	21.0%	21.9%	14.4%	7.5%p↓	30.3%	22.8%

나. (PET 단일무색)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PET병 재생원료 재고 적체 여건을 고려, ‘20년도 재활용의무율(80.0%)을 71.0%로 인하(9.0%p↓)

최근 3년 재활용률				‘20년도 예상 재활용률(B)	차이 (C=A-B)	‘20년도 의무율	
‘17년도	‘18년도	‘19년도	평균(A)			현행(D)	조정안(E=D-C)
79.0%	78.2%	75.1%	77.4%	68.4%	9.0%p↓	80.0%	71.0%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개정 고시(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0년에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변경) 합니다.

1. 2020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목			2020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811
	알루미늄캔		0.797
유리병			0.725
종이팩			0.228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병	단일 무색	0.710
		단일 유색	0.802
		복합재질	0.803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502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300
	기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8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759
	운할유용기		0.790
	운할유		
타이어			0.790
형광등			0.945
수산물 양식용 부자			0.294
전지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652
	리튬전지		0.582
	니켈·카드뮴전지		0.452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75
	니켈수소전지		0.161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384
김발장			0.804

2. 행정사항

○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